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143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개최 공고내용에 제1항의 의견청취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 등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

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규정은 도시개발 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5조(조합의 정관작성) ①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자격, 회의, 회계, 환지, 비용부담 등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재원)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8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율,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 관리자 등) 특별회계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 운용계획)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 및 보조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이하 “공채”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공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공채의 원리금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 하며, 그 이율은 국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채의 원리금 상환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소멸시효전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전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은행약정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출일 이후 공채의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 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공채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채원리금의 상환절차) 공채원리금의 상환은 채권의 원리금 상환 시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16조(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토지형질변경 협가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1) 국가기관 : 현법·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공공기관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라)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사)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
 - 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 (5) 주한 외국정부기관 :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1) 법 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면적
- (2) 영농 땅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타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 (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 나) 가)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 (5)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

라.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144 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 이주민”이란 2005. 5. 24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무장관이 지정·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라 한다) 예정지역 중 연기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말한다.
2. “생활안정기금”이란 행정도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막연한 예정지역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창업자금 등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및 차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 지원
2. 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등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

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시금고에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공무원인 행정복지국장, 행복나눔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연동면, 연기면, 금남면 시의원
 2. 연동면, 연기면, 금남면 이장협의회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3항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융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청

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예정지역 이주민임을 확인한 자에 한하여 응자 한다.

제15조(융자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제14조에 해당하는 응자대상자중 응자금을 받고자 하는 예정지역 이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응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응자대상자에게 응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응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 조건) ① 응자금 지원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② 응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응자금의 대부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제17조(지원한도액 초과금지) 응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응자금 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융자할 수 없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응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응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응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응자를 받은 자가 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응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기관에 융자금을 회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이주민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

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융자금 지급(상환)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기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

- 신청액 : 금 원(₩)
 용도 :
 융자기간 : 개월
 상환만기일 :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
 가족사항 및 소득·재산사항

성명	세대주와 관계	연령	직업	월평균소득	재산액	비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생활안정기금 융자 심사시 필요한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상의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여□ 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1년,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연락처 : _____

※ 붙임자료 : 예정지역 이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부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계획

사업명 : _____

총사업비 : 코 _____ 원(W) _____)

사업기간 : _____

사업소재지 : _____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서술>

사업효과 :

[별지 제3호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성명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체배작불명) ()	원	원	원	원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부료임대)	원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원	
재 산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토지				
	선박		입목재 산				
	항공기		여업권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명()	<input type="checkbox"/> 용도(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부 채	금융재산						
	동산	<input type="checkbox"/> 소(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폐지(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분양권 () 조합원 입주권 () 회원권	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input type="checkbox"/> 공정증시에 의한 사채 (원)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 ³⁾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						
<p>※ 본 조사서는 생활안정기금용자 심사용 이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p>							

[별지] 제4호 서식]

개인별 융자금 지급(상환) 관리대장

◎융자금 상환대상자

주 소 :	대출용도 :
성 명 :	용자일자 :
생년월일 :	용자금액 :
연락처 :	상환개시월 :
	상환만기월 :

상 환 내 역

[별지 제5호 서식]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원)	예 치 기 간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별지 제6호 서식]

기 금 출 납 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특별회계 설치)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령 및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적용의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이나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증축하는 건축물
 4.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증축(수직과 수평증축에 한한다)
-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 및 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욕실·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 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건축위원회(건설기

술심의위원회, 설계경기심사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5층이상 건축물

나. 숙박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로과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6.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7.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위치변경
 8. 건축물의 구조변경과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건축과장, 소방본부 방호구호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건축, 구조, 환경,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조경, 문화, 역사,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축계획심의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회의 개최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회의록)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축계획심의서(회의록 작성은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건축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은 건축복합민원 처리부서가 되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 기관의 협의회 개최 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시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출하는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 설계변경(공사비의 증액과 시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 및 명의변경 신청 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예치금의 보증기간은 당해 공사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현금구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신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2조(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 「주택법」 제16조와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제23조(건축허가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준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2006년 5월 9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건축물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가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제2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접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계사무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화초 및 분제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풍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시장이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보에 지정·공고한 전통시장 구역 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

후 시설

6. 경량철골을 이용한 비닐하우스식 고정식 온실 및 화원
7. 경량구조의 방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25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3. 영 제1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영 제15조제5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가설건축물
5.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6. 영 제15조제5항제13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가설건축물
7.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② 건축허가를 위한 업무대행은 설계자가 하고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 “사용승인검사자”라 한다)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니고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건축사를 지정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업무를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⑦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정화조 등 건축허가시 일괄처리사항은 제외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건축공사와 관련되어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7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2항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시설직렬 건축직류의 공무원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페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페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 및 공중 화장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자 등의 온실 기타 이와 비슷한 것
 6.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제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중

인 경우에 한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 5호(가구¹)이상의 주민들이 수년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통로가 유일한 통로인 경우
3.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농로·공원안 도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공유지
4.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6장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32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5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서로 같아야 한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그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 하천, 철도, 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가로구역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3. 도시의 미관·경관계획 및 장래 발전계획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그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 대지 상호간(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정남방향으로 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⑥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장 건축 설비

제3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접회사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4.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6.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7.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명시설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6.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7.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적율 : $[1 + (\text{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text{설치의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해당지역용적율}$

2. 건축물의 높이제한 : $[1 + (\text{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text{설치의 무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기준}$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장 보 칙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을 말하며, 법 제69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5의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중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3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획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자

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허가(신고)등 수수료 (제23조 관련)

건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단독주택	4천 원
200제곱미터 미만	기 타	9천 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 원
	기 타	2만 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 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 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 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0만 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0만 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0만 원

※ 비고 : 1.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고, 용도변경은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작물 및 가설건축물을 기타 건축물을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26조 관련)

건축규모(연면적의 합계)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4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5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7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8
3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9
6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3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21
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6
30만제곱미터 이상	48

비 고

1. 대행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매년 1월1일 기준) × 소요시간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비율로 하되, 천원 미만은 절사 한다.
2.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대수선 등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허가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 20퍼센트
3.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0퍼센트
4.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50퍼센트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건축물	
(1)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2)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건축물	
(1)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2)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3미터 이상
(1) 판매시설	
(2)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3) 문화 및 접회사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4) 종교시설	
라. 나중이 이용하는 다음의 건축물	
(1) 문화 및 접회사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2) 운수시설	3미터 이상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3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거리
마. 공동주택	
(1) 아파트	3미터 이상
(2) 연립주택	2미터 이상
(3)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기타 건축물	
(1)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2미터 이상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미터 이상
(3) 숙박시설(여관에 한한다)	2미터 이상
(4) 자동차 관련시설	2미터 이상

2.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건축물	
(1) 주거지역	3미터 이상
(2)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3)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 물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판매시설	1.5미터 이상
(2)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3)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4)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거리
라. 다중이 이용하는 다음의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2) 운수시설	1.5미터 이상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아파트	30미터 이상
(2)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3)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기타 건축물	
(1) 의료시설(종합병원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1미터 이상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5미터 이상
(3) 자동차 관련시설	1.5미터 이상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신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신청인 구 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설계자	<input type="checkbox"/> 시공자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계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무소명			등록 번 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 명			
	회사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p>「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p>				
첨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한 서류 및 도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심의(변경)신청서					
연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건축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리 번지	
건축주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용도지역	및 지구	지역		지구	
건축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건폐율		용도
	구조		용적율		기타용도
	건축종별	설계변경내용			
	최고높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동 세대		
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전화			성명
설비기계	주소			기술사등록번호 (기술전문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기계	주소			기술사등록번호 (기술전문분야)	
	사무소명	전화			성명
<p>「건축법」 제5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합니다.</p> <p>신청인 주소 :</p> <p>성명 : (인)</p> <p>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p>					
<p>첨부 : 1. 현장조사 보고서 1부 2. 건축계획서 20부 (인원수에 따라 부수조정 가능) 3. 에너지 절약계획서 20부(대상건축물에 한함)</p>					

[별지 제3호서식]

건축계획심의서

1. 건축개요

안건명					
건축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리	번지	
건축주 주소				성명	
지역·지구					
건축 계획	용도		건축면적 (m ²)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구조		건폐율	%	용적률 %

2. 심의 사항

항 목	적(O)부(X)	심의 의견
건축사 작성 현장조사서		
토지 소유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의한 건축선 제한		
이행강제금 납부		
기타		
종합적인 처리 의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건축심의 결과보고(통보)서

안건번호					
심의일시					
안건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심의신청 사항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리	번 지
	지역·지구		구 모		
	용 도		건축면적(m^2)		
	대지면적(m^2)		연 면 적(m^2)		
	구 조		건 폐 율	%	용적률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소위원회 수권위임, 부결)

심의의견

※ 제10조제5항에 따른 내용기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 신청서

건축주		주민(법인)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지번	
작공예정일	20 . . .		
사용승인신청 예정일	20 . . .		
예치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등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예치금액	일금	원정(₩)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관증

예치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등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예치금액	일금	원정(₩)	
예치자	주소:	성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위와 같이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건축주()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청구서

건축주	주민(법인) 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지번	
사용승인일	200 . . .	
예치방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등 <input type="checkbox"/> 보증서	
예치금액	일금	원정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20조제4항제5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예치금 보관증
------	---------

[별지 제7호서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

청구금액 : 일금 원정(W)

송금계좌 : (예금주:)

허가번호	건축허가 년 월 일	사용승인 년 월 일	건축위치	건축주	업무대 행분야	업무 대행자	업무대행 수수료

상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 계획과 시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경관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인가를 얻어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깨끗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깨끗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② 시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색채 및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수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 나. 경관사업 관련 전문가
 - 다. 경관사업 시행자
 - 라.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관관리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경관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

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② 제1항제3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 회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지위승계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와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경관위원회

제2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른 디자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 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경관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③ 공동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의 임기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된다.
-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시장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 ②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를 말한다.
- ③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과 제2항의 농촌주택사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 지정금고 및 농업협동조합 세종시지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장 농촌주택사업

제5조(세입) 농촌주택사업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읍·면·동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1인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지붕개량,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 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율 :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

- 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라. 변소 개량 융자금

- 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 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 택지조성사업

- 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기치 5년 균분상환

④ 할부금의 상환이 연체 되었을 경우에는 시중 은행 일반대출금 연체 금리를 적용한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주택사업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용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용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재개발지구, 취약지구, 관광지등 정책 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동 회계내의 지붕개량 사업비중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개량 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주택 건설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한하여 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및 빈집정비 사업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3. 빈집정비에 필요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및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해체사업 :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되,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빈집정비사업 :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요조사) 시장은 지붕해체 및 빈집정비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수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제7조(지원계획 및 수립)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5년단위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2. 빈집정비사업 :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정비계획 수립
3. 지붕해체사업 : 매년 4월까지 다음연도 정비계획 수립

제8조(지원신청 등)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해체사업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해체 지원 및 빈집정비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 (제8조 관련)

슬레이트 지붕 정비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	위 치		지 번	
	지역/지구		건축년도	
	구 조		용 도	
소유자현황	건축면적(㎡)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input type="checkbox"/> 농촌주택개량 <input type="checkbox"/> 농촌빈집정비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전부 철거			
전경사진				
읍·면·동 확인결과	- 제4조 해당여부 : <input type="checkbox"/> - 제9조 해당여부 : <input type="checkbox"/>			
<p>『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정비 지원 신청합니다.</p>				
신청인 : <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토지사용승락서 1부			

[별지 서식2] (제8조 관련)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	위 치		지 번	
	지역/지구		건축년도	
	구 조		용 도	
	건축면적(㎡)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전경사진				
읍·면·동 확인결과	- 제4조 해당여부 : -제9조 해당여부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登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분쟁당사자”란 「주택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시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분쟁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

가 있는 나수인일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신청사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의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 결서 및 회의록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11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란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주민등록표상 현재 거주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3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고인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수락 여부를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3부 작성하여, 2부는 분쟁당사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 ③ 조정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조정의 종결,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 거부, 중지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당해 분쟁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해당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동 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7. 제17조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8. 그 밖에 법령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조정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 거부,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검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부담)**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원인 발생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 직접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① 위원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결서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 현황	위치			면적	m ²	
	지역	지구		지목		
	용도	구조		세대수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층수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지하 층
분쟁조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						
첨부서류	1. 입주자동의서.					
<p>「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인)						
<p>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분쟁조정신청 통보서

파 신청인	이 름		전화번호	
	주 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대리인)	이 름		주 소	
분쟁조정 신청 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또는 소속	자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	년 월 일(:)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장소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출석대상자) 귀하

[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의견제출서

분쟁조정 신청내용			
당사자 (참고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의견			
기타			
<p>「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p>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위원회의 조정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된 이 사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관리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합의·조정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합의·조
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위 대리인 (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근거: 「주택법」 제52조제3항)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또는 중지사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종결(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공동주택관리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조정회의록

확인자 : 위원장

서명

작성자 : 간사

서명

□ 조정대상

- 단지명 :
- 신청인 :
- 피신청인 :
- 조정신청내용 :

□ 회의개요

- 일시 :
- 장소 :
- 참석위원 :

□ 회의내용

-
-
-
-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참석 위원			
조정 대상	단지명		
	위치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 내용			
조정 결과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의결함

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위원장			위원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